

대전지방법원 2023. 3. 30 선고 2022가단10434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3. 3. 9.

판 결 선 고 2023. 3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2. 22.부터 2022. 4. 22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성기권

별 지

청 구 원 인

1. 대여금채권

가. 당사자의 관계

원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,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의하여 피고 A에게 소상공인고용연계융자지원 자금 등을 대출한 자이고, 피고 A는 'B' 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던 자로 이 사건 제1, 2 대출거래약정상 주채무자입니다.

(갑 제1, 2호증의 1 대출거래약정서 각 참조)

나. 대출거래약정의 체결

1)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.

(갑 제1, 2호증의 1 대출거래약정서, 갑 제2호증의 1, 2 대출상세조회 각 참조)

대출	대출거래 약정일	대출기간 만료일	대출과목	대출금액
제1대출	2021.07.15	2026.07.21	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	10,000,000원
제2대출	2021.08.04	2026.08.06	저신용소상공인융자	10,000,000원

2) 위 약정 당시 피고 A는 대출거래기본약관 제2조에 의하여 이자 등의 율, 계산방법,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, 원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원고가 정한 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, 대출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에는 원고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곧 갚기로 약정하였습니다.

(갑 제3호증 대출거래기본약관 참조)

다. 대출의 실행

원고는 위 각 대출거래약정에 기하여 피고 A에게 아래 표와 같은 금액을 각 대출하여 주었습니다.

(갑 제1, 2호증의 1 대출거래약정서, 갑 제2호증의 1, 2 대출상세조회 각 참조)

대출	대출과목	대출실행일자	대출금액
제1대출	소상공인고용연계융자지원	2021.07.21	10,000,000원
제2대출	저신용소상공인융자	2021.08.06	10,000,000원

라. 기한전의 채무 변제 의무 및 기한이익의 상실

피고 A는 위 각 대출 이후 이 사건 제1대출에 대하여 2021. 12. 22. 연체를 발생시켜

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이 사건 제2대출에 대하여는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, 이 사건 대출거래기본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‘진흥공단(채권자)에 대한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’에는 원고로부터의 독촉·통지 등이 없어도, 피고 A는 당연히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는 기한전의 채무 변제 의무가 있는바, 이 사건 제1대출이 2021. 12. 22.자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대출은 위 규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(갑 제2호증의 1, 2 대출상세조회, 갑 제3호증 대출거래기본약관 참조)

마. 대여금채권

따라서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현재 20,000,000원(제1대출 대출잔액 10,000,000원+제2대출 대출잔액 10,000,000원)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

(갑 제2호증의 1, 2 대출상세조회 각 참조)

바. 지연손해금율

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연체발생일(기한이익 상실일)인 2021. 12. 22.부터 현재까지 연 6%입니다.

(갑 제4호증 지연배상금률 참조)

사. 소결

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20,000,000원(제1대출 대출잔액 10,000,000원+제2대출 대출잔액 10,000,000원)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연체발생일인 2021. 12. 22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원고 소정의 연 6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2. 사해행위

가. 법률행위

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20,000,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있는바, 피고 A는 2021. 12. 22.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, 원고를 해탈 목적으로 그의 소유재산인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 이라고 합니다) 중 자신의 지분(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A의 지분이 2분의 1이고, 나머지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은 A의 지분이 5분의 1입니다)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겸 자신의 친누나인 피고 C(이하 ‘채무자’ 라고만 합니다)과 2021. 9. 8.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이에 기하여 2021. 9. 15.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47785호로 A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.

(5갑 제4호증의 1 내지 5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참조)

나. 사해의사

위와 같이 피고 A는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,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한 날인 2021. 12. 22.로부터 불과 약 3개월 전인 2021. 9. 8.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겸 자신의 친누나인 피고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이에 기하여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자신의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고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원고를 해할 의사로써 행한 것으로 사해의사가 있다 할 것이며, 이에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.

다. 사해행위의 성립

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,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(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다57320 판결, 2006. 5. 11.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), 피고 A가 자신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자신의 친누나인 피고 C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입니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 A에 대하여는 대여금 청구, 피고 C에 대하여는
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각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.

